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2000. 10. 13.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행사업을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
- 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
- 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게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관련법령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나. 기타 :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붙임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3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업

제5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장애인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하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가 구청장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저소득장애인	일반장애인	
각종검사.치료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35조에 준함	
기타 이용시설	1회 또는 시간당	무료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